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찬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4
----------	------

발의연월일 : 2016년 4월 25일

발 의 자 : 주찬식 의원(1명)

찬 성 자 : 최호정, 남창진, 김춘수,
남재경, 이명희, 이석주,
조상호, 문종철, 김진영,
유 청, 이종필, 유광상
의원(12명)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 자치구와 구의 경계에 따라 설치된 공공하수도는 설치지역과 수혜구가 다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혜를 많이 받은 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권자가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부지를 포함한 시설물을 임의로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자치구간 논쟁을 유발하고 있는바,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치구간 경계에 설치된 공공하수도 시설 및 부지에 대해 관리권자가 타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련부지를 사용(관리목적인 경우 포함)하고자 할 때는 소유권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별첨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관리권자는 해당시설을 타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련부지를 사용(관리목적인 경우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시설 또는 부지 소유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관리의 특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경계에 따라 설치된 공공하수도는 도로 또는 하상을 관리하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공공하수도 설치지역과 수혜구가 다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혜를 많이 받은 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되, 그 관리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6조(관리의 특례) ① ----- ----- ----- ----- ----- ----- ----- ----- ----- -----.</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관리권자는 해당시설을 타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련부지를 사용(관리목적인 경우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시설 또는 부지 소유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별첨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원 주찬식